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소속 교육위원회 여 명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국외여행시 받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절차상 대상자 선정과 기회균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시 공무국외연수규정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심사위원 구성 기준이 각각 7명과 5명 등으로 다름에도 계속 공무국외여행이 명확한 근거와 기준 없이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높아진 시민들의 눈높이와 시대적 변화에 맞춰 공무국외여행은 사전 계획과 심사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시 당연직 의원 1명을 제외하고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